

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] <신설 2024. 7. 4.>

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기준(제14조의2제2항 관련)

1. 인력기준

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병성감정책임자를 둘 것

- 1)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수산 질병관리사 또는 의사
- 2)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산생물 질병 관련 부서에 소속된 사람
- 3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수산생명의학·해양생명의학·어병학·양식학·수산생물학 관련 분야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병성감정담당자를 2명 이상 둘 것

- 1)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관련 경력이 1년 이상인 수산 질병관리사 또는 의사
- 2)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서 수산생물 질병 관련 부서에 소속된 사람
- 3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수산생명의학·해양생명의학·어병학·양식학·수산생물학 관련 분야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
2. 시설 및 장비기준

가. 시설기준

- 1) 임상검사실: 수도 및 배수시설이 있고,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일 것
- 2) 정밀검사실: 무균대가 설치되어 있고, 기자재는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,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일 것

나. 장비기준

- 1) 유전자증폭기(DNA amplification system) 1대 이상
- 2) 자외-가시선 분광광도계(UV-Vis spectrophotometer) 1대 이상
- 3) 탁상형 원심분리기(Benchtop centrifuge) 1대 이상
- 4) 탁상형 냉장원심분리기(Refrigerated benchtop centrifuge) 1대 이상

- 5) 가열기(Block heater) 1대 이상
- 6) 전기영동장치(Agarose gel electrophoresis) 1대 이상
- 7) 겔분석시스템(Gel document system) 또는 자외선작업함(UV illuminator)
1대 이상
- 8) 저온배양기(Low temperature incubator) 1대 이상
- 9) 고압멸균기(Autoclave) 1대 이상
- 10) 교반가열기(Stirring hotplates) 1대 이상
- 11) 건식멸균기(Dry heat sterilizer) 1대 이상
- 12) 광학현미경(Microscope) 1대 이상
- 13) 초저온냉동고(Ultra-low temperature freezers) 1대 이상
- 14) 냉동고(Freezer) 2대 이상
- 15) 냉장고(Refrigerator) 2대 이상
- 16) 무균대(Clean bench) 1대 이상
- 17) 증류수제조기(Water distillation system) 1대 이상
- 18) 조직분쇄기(Crushers or pulverisers) 1대 이상
- 19) 분석용전자저울(Analytical balance) 1대 이상
- 20) 분석용 미량 전자저울(Analytical Microbalance) 1대 이상

비고: 제2호나목에서 규정한 장비의 규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
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